

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57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1. 2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폐지이유

조례의 주요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,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등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2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제88조(과징금 처분)

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·도 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제47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
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110조(과징금의 납부통지 등) ①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.

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,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31조 (과징금의 납부통지등) ①영 제7 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.

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,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9년 12월 7일

산업건설위원회

I. 심 사 경 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
2. 회 부 일 자 : 2009년 11월 3일
3. 상 정 일 자 :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
제7차 산업건설위원회(2009. 12. 7)상정,
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권식)

1. 제안이유

조례의 주요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,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등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를 폐지함.

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연정수)

- 본 폐지 조례안은 1989년 1월 1일 국토해양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, 운영해 왔으나, 주요내용이 상위법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
-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Ⅳ. 질의·답변요지 : 생 략

Ⅴ. 토 론 요 지 : 생 략

Ⅵ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Ⅶ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